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2023. 9.

여성가족위원회

차 례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1
4. 감사반의 편성2
5. 감사일정 및 장소 4
6. 감사진행원칙 4
7. 기본 자료요구 목록 8
8.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10
9. 기타 10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법률안 및 2024년도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기능을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감사기간

○ 2023. 11. 2(목), 11. 3(금), [2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국정감.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제3호)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국정감.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6개 기관)				
총 6개 기관				

4. 감사반의 편성

○ 여성가족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함.

ㅇ 감사반 : 17인

구 분	교섭단체(정당)	위 원 명	비고
감사반장	더불어민주당	권 인 숙	위원장
감사위원	더불어민주당	신 현 영	간 사
		김 한 규	
		문 정 복	
		양 경 숙	
		양이원영	
		이 동 주	
		이 원 택	
		장 경 태	
		한 준 호	
	국민의힘	정 경 희	간 사
		김 미 애	
		지 성 호	
		조 은 회	
		최 승 재	
		최 연 숙	
	기본소득당	용 혜 인	

ㅇ 사무보조자

구 분	직 위	성 명	비고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김 수 옥	
	입법심의관(3급)	이 은 정	
	입법조사관(3급)	최 유 순	
	입법조사관(4급)	표 승 연	
	입법조사관(4급)	이 주 연	
	입법조사관(5급)	박 형 진	
	입법조사관보(6급)	황 명 숙	
사무보조자	주무관(6급)	최 경 희	
	행정관(6급)	김 안 희	
	행정관(7급)	이 민 희	
	의정기록 주무관	최 정 민	
		신 재 선	
		정 숙	
	정 책 연 구 위 원	김 혜 연	더불아민주당4급상당)
		공 미 희	국민의힘(4급상당)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상기관	장 소	감사반
11.2.(목) 10:00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가족위원회 회 의 실 (본관 550호)	위 전 전
11.3.(금) 10:00	ㅇ 현장시찰	미 정	위원 전원

6. 감사진행원칙

가. 감사방법

- 국정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및 정책질의, 서류 등 제출요구,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현장시찰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ㅇ 질의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질의도중 음성 또는 음향이 출력되지 않는 영상물의 방영은 질의 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다만, 음성 또는 음향 출력물에 대해 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되,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 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한 후 의결로 정한다.

그 밖에 감사 진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보고요구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현황 전반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요구한다.

- (1)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집행 현황 (9월말 현재)
- (2)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실적 (9월말 현재)
- (3) 2024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및 기금운용 방향
- (4) 2022년도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결과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다. 서류 등의 제출요구

- (1) 서류 등 제출요구 방식
 - 이 위원회 의결에 의한 요구(원칙)
 - 감사위원은 서류제출 요구 목록을 작성하여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의 위원회 의결 전날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 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 의결 후 각 기관에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 ㅇ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 위원회 의결 이후 추가적인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서류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서류제출 요구기한은 10월 20일 금요일 18시로 한다.
- (2) 감사를 위한 서류 등의 제출요구는 계획서에 명시된 기본적인 서류와 감사위원이 제출요구하는 서류 등으로 한다.
- (3) 서류 등의 제출은 전자파일의 형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서류 등의 제출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요구한 경우에는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기관증인

- 감사대상기관의 기관장 및 간부직원을 다음 기준에 따라 기 관증인으로 출석 요구한다.
 - 여성가족부 : 장관, 차관, 부서장(국장급 이상) 및 운영지원과장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기관장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기관장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기관장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기관장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기관장

※ 붙임 명단 참조

- 기관증인 출석요구 의결 이후 감사 대상기관에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자의 직위에 새로 보직된 자가 증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경된 전임자는 필요한 경우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도록 한다. 감사 당일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에는 부서 내 차상위 직급자가 대리출석 한다.
- 기관증인의 변경은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일반증인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관련 일반인을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한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다.

※ 증인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송달

마. 선서요령

- (1) 선서는 증인·감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2)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기립하여 받는다.
- (3)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바. 감사 진행순서

- (1) 감사개시 선언
- (2) 위원장의 인사
- (3) 증인선서
- (4) 기관장 인사 및 업무보고
 - ㅇ 여성가족부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포함)
 - ㅇ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기관장 인사)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기관장 인사)
 - o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기관장 인사)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기관장 인사)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기관장 인사)
 - (5) 질의 및 답변(증인신문 및 증언) 등
 - (6) 감사종료 선언

사. 감사의 공개

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7. 기본 자료요구 목록

가. 여성가족부

- ㅇ 일반현황(조직, 인원, 예산, 설비 또는 시설)
- 2023년도 조직·인사변동사항
- 2023년도 업무현황(주요사업 추진실적 포함)
- 2023년도 예산집행 내역(2023. 9월말 현재, 전년도 대비)
- 2024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및 업무추진 계획
- 여성정책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추진실적, 향후계획(2022, 2023.9월말 현재)
- 전익증진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추진실적, 향후계획(2022, 2023.9월말 현재)
- 청소년정책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추진실적, 향후계획(2022, 2023. 9월말 현재)
- 가족정책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추진실적, 향후계획(2022, 2023.9월말 현재)
- 각종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 사업추진내역(2022, 2023. 9월말 현재)
-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2022, 2023. 9월말 현재)
- 신규채용, 전입, 승진 현황(2022, 2023. 9월말 현재)

- 양성평등기금 조성계획 및 조성액, 사용내역, 향후 기금의 운영
 및 관리방향(2022, 2023. 9월말 현재)
- 청소년육성기금 조성계획 및 조성액, 사용내역, 향후 기금의
 운영 및 관리방향(2022, 2023. 9월말 현재)
- 국제협력사업 추진 현황(2022, 2023. 9월말 현재)
- 직원 해외출장 현황(방문국, 기간, 면담자, 소요예산, 효과 등)(2022, 2023. 9월말 현재)
- 감사원 및 자체 감사결과(2022, 2023. 9월말 현재)
- ㅇ 그 밖에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나. 산하 공공기관(5개 기관)

- 예산집행 및 주요사업추진 실적(2022, 2023, 9월말 현재)
- 2024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및 업무추진 계획
- ㅇ 중기사업추진 계획
- 조직 및 직원(교수 등) 현황(주요경력 등)
- ㅇ 이사회(이사 등), 감사 현황(주요경력 등)
- 2020년 이후 직원변동 현황(변동사유 등)
- 직원 해외출장 현황(방문국, 기간, 면담자, 소요예산, 효과 등)(2022, 2023, 9월말 현재)
- ㅇ 시설 현황
- 감사원, 여성가족부 및 자체 감사결과(2022, 2023. 9월말 현재)
- ㅇ 정관 및 관련 법규
- ㅇ 그 밖에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8. 국정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 가. 국정감사결과보고서(안)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정리·작성한다.
- 나. 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실시 기관, 실시경과 및 감사결과(주요 감사실시 내용, 시정요구 사항),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 신문 결과와 처리의견 등을 포함한다.
- 다.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안)를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하고 그 의결로 채택한다.

9. 기타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일시 및 국정감사 장소 변경, 현장시찰 실시 여부 등 세부적인 감사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붙임]

국정감사 증인명단 (기관증인)

1. 여성가족부 : 11인

연번	직 위	성 명	출석일시	출석장소	비고
1	장 관	김현숙	2023.11.2.(목) 10:0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본청 550호)	
2	차 관	이기순	"	"	
3	기획조정실장	황윤정	"	"	
4	청소년가족정책실장	박난숙	"	II .	
5	여성정책국장	김종미	"	II .	
6	권익증진국장	최성지	"	II .	
7	대변인	조민경	"	II .	
8	정책기획관	김가로	"	n n	
9	청소년정책관	김권영	"	ıı .	
10	가족정책관	김숙자	"	ıı .	
11	운영지원과장	양철수	"	n n	

2. 산하기관 : 5인

연번	기 관	직 위	성 명	출석일시	출석장소	비고
1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원 장	장명선	2023.11.2.(목) 10:0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본청 550호)	
2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이사장	손연기	"	n	
3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이 사 장	윤효식	"	n	
4	한국건강가정 진흥원	이 사 장	(공석)	ıı .	n	이사장 직무대행: 전주원
5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원 장	신보라	"	"	